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088

제출연월일: 2024. 7. 2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9조제1항 중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로 한다.

제3조(「의료법」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ரி)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 이상의 <u>형</u> 을 선고받고	2 <u>실형</u>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	<u>끝</u> 나거나(집행이 끝
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
	한 사람
<u><신 설></u>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결격 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	
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약사법」·「마약류 관리</u>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u>에 관한 법률</u> • 「보건범죄	<u> 관한 법률」</u>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형법」 제347	
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	
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	
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u>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u>	<u>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u>
	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u>사람</u>
<u><신 설></u>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5. (생략)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있는 /	나람
------	----

5. (현행과 같음)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 <u>제5조제1호부터</u>

<u>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u>-----

② ~ ⑥ (현행과 같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임원) ① ~ ③ (생	제48조의2(임원)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u>라</u>
<u> <신 설></u>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